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통신사업자 시험·인증을 통한 지역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대 표 : 장세용

(3)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4) 출연예정액 : 금2,000,000천원(도비 600,000천원, 시비 1,400,000천원)

※ 5차년도('19. 6월 ~ '20. 5월)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

나. 주요 사업

- (1) 사 업 명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 (2)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0년 5월 (5년간)
- (3) 사업위치 :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 (4) 총사업비 : 435억원 [국비(균특)220, 도비30, 시비70, 민자115]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435	50	130	104	95	56
국 비	220	20	65	59	55	21
도 비	30	6	6	6	6	6
시 비	70	14	14	14	14	14
민 자	115	10	45	25	20	15

(5)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구미시

(6)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7) 사업내용

-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시험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업자(Nokia, China Mobile 등) 대상으로 국내 최초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 글로벌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에서 인증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국내 인증 대행 서비스 제공

(8)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2 : Alcatel-Lucent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
- 2015. 3 : 'K-ICT 전략' 중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015.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1차년 협약 체결
- 2015. 8 :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
- 2016. 5 : Nokia 2G, 3G 인증장비 구축 완료
- 2016.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2차년 협약 체결
- 2016. 8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
- 2017. 5 : Nokia 및 China Mobile 4G 인증장비(일부) 구축 완료
- 2017. 5 : Nokia 4G 인증권한 획득 및 인증서비스 개시
- 2017.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3차년 협약 체결
- 2018. 5 : China Mobile 4G 인터로밍 인증장비 구축 완료
- 2018. 6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4차년 협약 체결
- 2018. 8 : China Mobile 4G 인증권한 획득
- 2018. 10 : China Mobile 4G 인증서비스 개시
- 2019. 5 : Nokia 4G NB-IOT 인증인프라 구축
- 2020. 4 : China Mobile 4G NB-IOT 인증인프라 구축

다. 출연의 필요성

- (1)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통한 스마트 기기, IoT 단말, 국산 네트워크 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2) 국내 최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단말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시장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 제22조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6)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 실적

□ 기반조성사업(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 Nokia 2G(GSM)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2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6년 5월, 구축금액 : 866,503천 원



2G(GSM) 인증장비

○ Nokia 3G(WCDMA)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6년 5월, 구축금액 : 965,211천 원



3G(WCDMA) 인증장비

○ Nokia 4G(LTE)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7년 5월, 구축금액 : 4,432,702천 원



4G(LTE) 인증장비

○ China-Mobile 4G(LTE) NV-IOT System(Access) 인증장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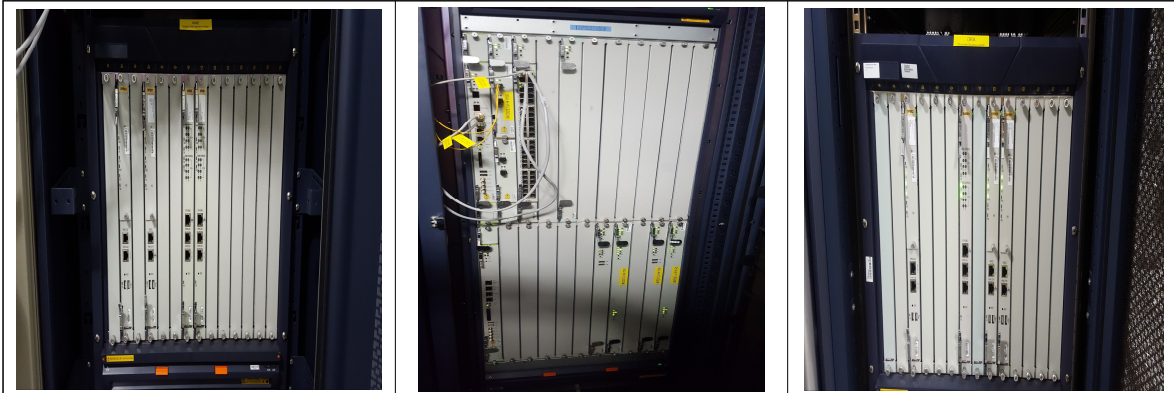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6년 10월, 구축금액 : 926,936천 원



4G(LTE) 인증장비

○ China-Mobile 4G(LTE) NV-IOT System(Core)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7년 5월, 구축금액 : 1,249,939천 원



4G(LTE) 인증장비

○ China-Mobile 4G(LTE) VoLTE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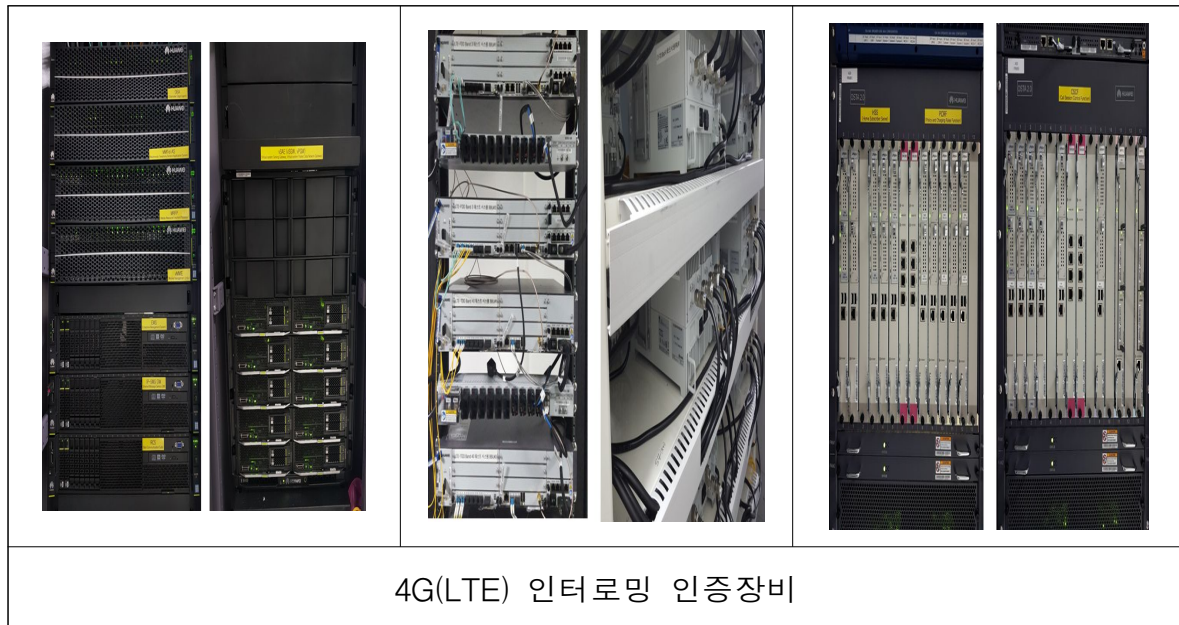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7년 5월, 구축금액 : 879,581천 원



4G(LTE) VoLTE 인증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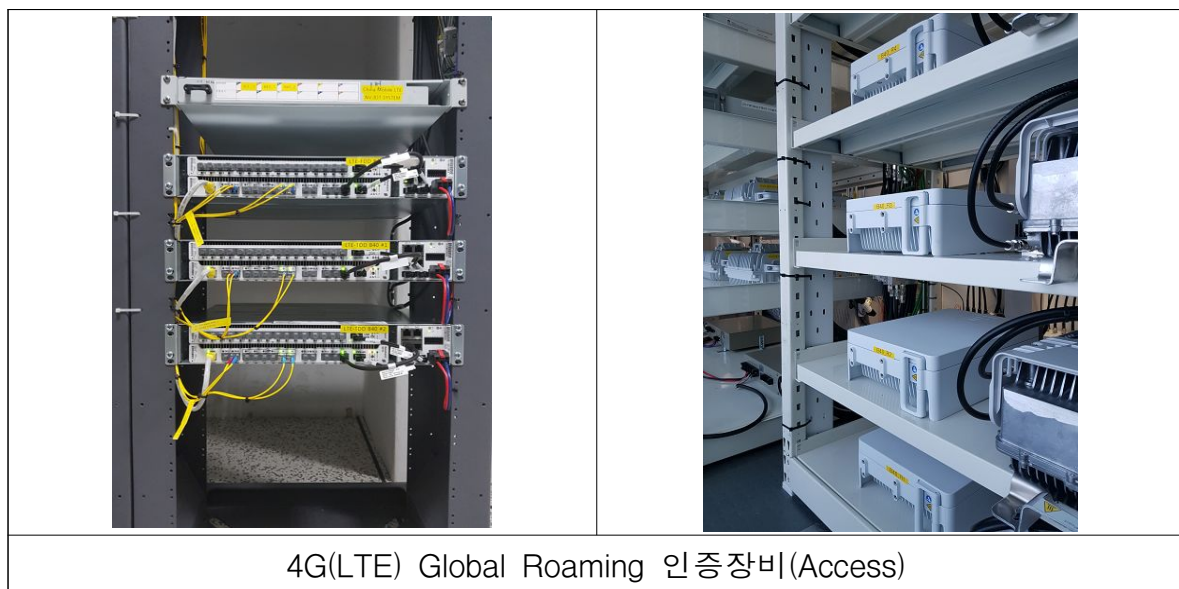
○ China-Mobile 4G(LTE) Inter Roaming NV-IOT System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8년 5월, 구축금액 : 4,162,382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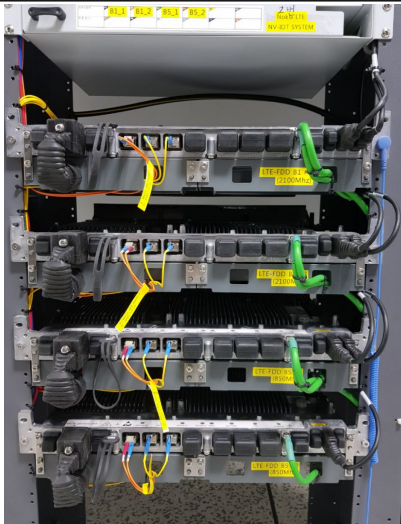


○ China-Mobile 4G(LTE) Global Roaming NV-IOT System(Access)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8년 5월, 구축금액 : 620,339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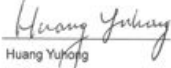


- Nokia 4G(LTE) NV-IOT System(Access) 인증장비 구축
 - 주요 용도 :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 시험
 - 구축완료 : 2018년 5월, 구축금액 : 743,708천원



4G(LTE) NV-IOT System(Access)

○ Nokia(2G, 3G, 4G)/China Mobile(4G) 인증권한 획득

NOKIA 15 May 2017 Gumi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GERI) 17, Cheomdangjeop 1-ro, Sandong-myeon Gumi-si, Gyeongsangbuk-do 39171 Republic of Korea <u>RE. Interoperability Test and Issuance of Joint Test Report</u> We, Nokia Networks and Solutions Korea Ltd., hereby confirm that: (i) GERI Lab is equipped with the Nokia 2G/3G/LTE/IMS solutions that a Nokia company, supplied; (ii) GERI Lab is suitable to perform the interoperability test in connection with the aforementioned Nokia communication networking solutions; (iii) interoperability tests are to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Nokia's standard interoperability procedures and training sessions to be provided by Nokia's Device IOT Excellence Center (DIOTEC) in 2017; and (iv) GERI will be able to produce, issue and/or publish joint test reports in collaboration with Nokia in the sole name of its own. We are willing to offer additional solutions and related training programs that can enable GERI and its personnel to acquire the same level of technical capacity as described above. The detailed scope and process will be defined in a separate service level agreement to be agreed and entered by and between the related parties. Andrew James Cope Representative Director Nokia Solutions and Networks Korea Ltd.	中国移动 China Mobile GTI Aug 31, 2018 GERI(Gumi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7, Cheomdangjeop 1-ro, Sandong-myeon Gumi city, Gyeongsangbuk-do 39171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CMCC/GTI Recognized Test Laboratory CMCC/GTI recognizes that GERI test lab is fully compliance to CMCC/GTI's standard wireless test net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NDA(dated on Nov 25, 2014) and MOU(dated on July 31, 2015) signed between CMCC and GERI. It includes a test network and test plan suitable for performing CMCC/GTI's IOT test criteria in LTE and VoLTE. As a result, CMCC/GTI, hereby, certifies that GERI is accredited as a test lab in Korea, and responsible to test and demonstrate the compliance of the product to CMCC/GTI's IOT certification criteria. CMCC/GTI wishes to collaborate with GERI continuously on 5G. Sincerely yours,  Huang Yuhong Vice Chairman of CMRI & Secretary of General of GTI
노키아 인증서	차이나모바일 인증서

○ Nokia 인증랩 이용실적('18. 8월 기준)

- 시험인증 이용건수 59건, 인증서 발급건수 26건

※ 노키아 시험인증 26건, GERI 자체시험인증 33건

○ 인증랩 전용공간 구축

- 용도 : 인증장비 운영 및 설치, 인증시험

		
운영실	전용공간	차폐실

○ 인증기술교류회 개최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유관기관 초청 발전방향 기술세미나('16. 3월)
- 중국 통신사업자 인증기술 세미나('16. 4월)
- 차이나모바일 인증기술 세미나('17. 10월)
- 글로벌 이동통신 기술동향 및 NB-IoT 인증기술 교류 세미나('18.4월)

○ MOU체결

- Nokia(舊Alcatel-Lucent) 인증랩 구축 MOU 체결('15. 2월)
-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MOU 체결('15. 8월)
- GTI 인증랩 구축 MOU 체결('16. 6월)
- Nokia 사명 변경에 따른 MOU 재체결('17. 3월)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16. 08. 29.)



○ 인증랩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인증랩 수요기업 간담회 '16. 6월)



(인증랩 기업설명회 '16. 12월)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법률·회계·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 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최동문
	담 당	최연호
	담 당 자	이용삼 (480-6143)